

[외교·안보 영역: 발제2]

북한인권법의 제정 필요성 유무와 제정 방향 제시

-북한의 인권 인식과 인권법을
중심으로-

[발제자] 지단예 (대원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토론자] 이규희 (대원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이승희 (대원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발제>

북한인권법의 제정 필요성 유무와 제정 방향 제시 -북한의 인권 인식과 인권법을 중심으로-

지단예 (대원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I.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 동기와 필요성
3. 연구 방향

II. 본론

1. 인권의 기준
 - 1) 국제사회의 인권의 기준
 - 2) 북한 인권의 기준의 차이와 그 원인
 - 3)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인권의 실태
 - 1)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 실태
 - 2) 탈북자들의 인권 실태
3.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과 제정 방향
 - 1) 북한인권법
 - 가.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 나.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
 - 2) 북한인권법 제정의 찬성과 반대
 - 가. 찬성의견
 - 나. 반대의견
 - 다.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과 필요성에 대한 결론
 - 3) 쟁점사항
 - 가. 민생개념의 포함 유무 -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
 - (1) 문제 원인
 - (2) 민생 배제 필요성
 - (3) 제정 방향
 - 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1) 문제 원인

(2) 필요성

(3) 제정 방향

다. 북한인권재단 설치-민간단체 지원

(1) 문제 원인

(2) 필요성

(3) 제정 방향

III. 결론

1. 북한인권법의 제정에 대해서
2. 북한인권법 제정 방향
3. 연구 의의

참고문헌

I. 서론

1. 문제 제기

북한의 인권 실태는 오래전부터 심각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인권을 개선하는데 참여하였다. 미얀마 등의 나라에서의 탈북자들의 인권 실태 그리고 중국과 라오스 북송 문제로 인해 2005년 발의 후 계류됐던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몇 년 전에 제정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은 광대한 범위의 분야에서 일어난다. ‘꽃제비 소년’ 또는 ‘토끼풀 소녀’ 등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식량 총 공급량도 감소하지만 식량권 부여가 감소하면서 북한의 식량권 문제가 일어나고, 여성은 가정에서 폭력을 겪는 희생자들이 된다. 또한, 북한은 의견의 자유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며 그곳에서는 잔혹한 인권유린이 행해진다.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한의 인권의 실태를 인식하면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인권 개선 방안의 방향에 대해서 각국 그리고 국내의 의견이 다양하다. 북한에 법률 등으로 국제적 압력을 가하여 강제적으로라도 북한이 인권을 개선할 수 있게 하거나, 북한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스스로 인권 법안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소통을 하고 또 이를 위해 국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관련법이나 정책 하나가 제안될 때마다 찬성과 반대의견 등 많은 의견이

충돌하고, 여러 번의 검토를 거치며 제정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현재도 제정 전 논의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북한인권법이 재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3월에 여당인 새누리당의 몇몇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여당이 몇 가지 쟁점은 피하고 몇 가지는 자신들의 의견만을 반영하여서 발의한 것인데, 그 법안이 최종적으로 북한인권법으로 제정될지는 모르고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2005년 이후로 실제 제정에 가장 가까운 수준까지 왔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 동기와 필요성

첫 발의 된지 몇 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하게 한 요인들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여러 의견들이 충돌하는 몇 가지 조항들이 핵심이다. 북한인권법 제정 유무에 대한 의견도 대립하지만, 현재 여당과 야당은 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의 분립 등 여러 가지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학생으로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끝에 논문을 통해 북한인권법이 실제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제정이 필요하다면 논란이 되는 조항들에 대해 분석한 후 대립하는 양쪽을 모두 설득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른 정책이 아닌 인권법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인권이 인권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며, 조약과 관습법과 같은 법적 근거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는 법안에 명시된 방법들로 인권 개선과 보호에 나서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행동 범위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법 제정이 인권 신장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권법의 제정은 인간이 인권의 보호와 인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대와 인식이 확장된 결과이며, 제정을 통해서 인권과 인권 보호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그 역할과 더 나아가 인권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인권 개선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거나 소통을 중시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북한인권법을 북한을 억압하는 대북정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법률 제정으로 인해 국가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시간이 지나더라도 북한 내부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과연 북한의 인권에 대해 법률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지, 또 북한인권법이 그와 같은 방식의 접근이라면 실제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력을 지녔는지 등 세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지, 법안에 명시되어있는 조항들이 각각 인권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은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3. 연구 방향

북한인권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인권’이라는 권리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북한도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법률의 인권 보호 정도가 타 국가들에 비해 낮다고 해도 어째서 북한의 인권이 이토록 심각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았다. 본론의 첫 번째 부분에는 국제 인권의 기준과 북한의 인권 기준의 비교를 통해 북한이 인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정치적 체제 등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혔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 인권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와 주장의 근거들을 분석해보았다.

두 번째 부분은 인권 인식의 차이로 인해 오래 전부터 발생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아보았다. 북한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 행해지는 인권 침해는 생존권, 자유권 등을 중심으로, 탈북자들에게 행해지는 인권 침해는 북송 문제와 미얀마 등의 사례들을 토대로 철저히 파악했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의 인권 기준의 바탕이 되는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의 인권의 기준을 알아보고, 그 차이가 생긴 원인을 밝힌 후에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북한 지역 내의 주민들과 탈북자들의 인권 실태를 알아보도록 했다.

본론의 세 번째 부분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연구이다. 처음에는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그 내용에 대해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중의 상황을 알아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알아본 후에 각각의 인정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분석하고 북한인권법의 쟁점이 되는 법안의 몇 가지 조항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밝힌다. 쟁점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선정했다.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으로 나누는 데에 문제가 되는 민생의 개념 포함 유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유무 그리고 북한인권단체의 설립, 즉 그 주요 역할인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 논쟁 원인을 알아보고 그 조항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제정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II. 본론

1. 인권의 기준

1) 국제사회의 인권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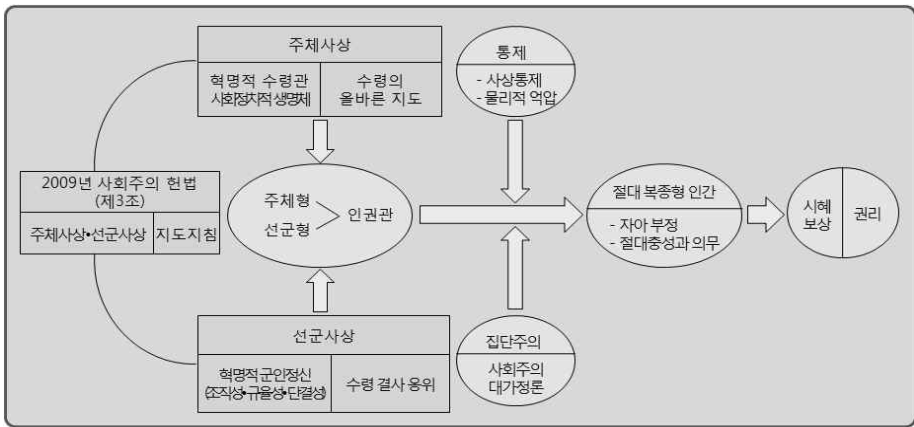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은 세계 인권 선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수록되어있다. 세계 인권 선언은 국제 연합에서 세계 2차 대전 이후 인권 보호를 위해 한 발표인데, 국제 연합 헌장이 주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인권을 자세히 정한 것이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UNOHCHR: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가 발간한 책자에서는 “인권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타고난 권리로 인식되고 있고, 인권이라는 개념은 모든 개개 인간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의견, 민족 혹은 사회적 기원, 재산, 출생 및 기타 지위에 대한 구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두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의 인권은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이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기본으로 하면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 여기서의 인권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자유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권리를 무시할 경우 다른 권리들의 존중과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권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연관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이며, 순위를 매길 수 없이 모든 인권이 똑같이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2) 북한 인권의 기준의 차이와 그 원인

북한이 인권을 보는 시각은 국제사회의 시각과는 꽤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노동신문을 포함한 조선중앙방송이 “인권의 기준은 그 나라의 정치권 행사를 하는 세대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고, 또한, 조선중앙방송은 “세계 모든 나라에 똑같은 인권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인권을 규정하는 보편적 적용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권의 기준이란 없으며, 각 나라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인권을 요구하는 것은 세계제패전략이라고 여기며 세계화의 논리와 연결시킨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양 국가들이 인권문제를 정치화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권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미국의 인권공세는 세계를 미국화, 서양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이것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영변원자로 폐기를 비롯한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폐기, 그리고

비핵화의 필요성이 명문화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 수단인 “북조선인권개선문제”에 대한 사전대응에 급급한 예민한 반응이라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이 인권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하면서 세계를 일체화하고 전 세계를 서방식 자유세계로 만들고 결국 모든 민족을 예속시키고 동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이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은 인권문제를 안보와 위협의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그 접근이 시작된 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면서 인권 문제를 다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등이 북한의 수령체제가 위협된다는 우려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북한이 김정일 우상화 독재체제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의 실태를 정당화하고 우상화세습독재를 이어가려는 교활한 음모술책 그리고 북한인민들을 기만하고 노예화하려는 목적에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북조선 사회에서 김정일은 자기 가문의 우상화독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엄금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들을 60여 년 동안 비밀리에 자행해 왔다. 그 대표적인 증거물은 바로 북조선의 회령, 개천, 청진, 요덕, 화성 등 정치범관리소에서 행해지는 20만 정치범들에 대한 짐승보다 못한 학대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전 지역에서 보위부, 보안원, 비사회주의그룹 그리고 규찰대에 의하여 자행되는 고문, 학살, 공개총살, 강제노동 등이 그것이다. 정책적으로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볼 때 북한은 북조선인민들의 생존활동을 통치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이유로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인식을 정당화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정권안보의 관점에서의 인권과 그 주장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그림 1]과 함께 알아본다.



[그림1] 주체형 선군전략과 인권

*출처: 이금순, 김수암, '북한인권 침해 구조 및 개선 전략'(2009, 55p)

북한은 일반 사회주의와 같이 집단주의를 강조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제63조)라고 명시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

듯이 집단주의 원칙은 수령에 대한 절대충성과 가부장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주의 인식이 아닌 ‘개인’을 주체로 하는 인권이 체제, 특히 리더십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보편성을 지닌 국제 인권과 반대로 극단적인 계급원칙과 배제의 규칙이 존재한다. 북한은 바로 이런 원칙들을 체제와 정권안보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수령체제에 위협이 되는 세력에 대한 탄압과 이들의 인권 무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정 계층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하는 규칙이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이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문헌에서는 인권을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면 인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인권은 수령과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되었을 때 인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의 인권개념은 주체사상과 결합되고 군사를 우선시하는 선군전략과도 연계된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이 인권 문제에 접근하면서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고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도를 지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권을 상실하면 인권도 상실된다고 한다. 이렇게 북한은 인권을 국권과 동일시하고 있고, 인권을 보장하는 길은 국권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국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군전략이 인권과 결합되고 이를 선군전략을 위한 혁명군대와 같은 혁명적 군인정신을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서 자아 인식이 형성되지 않는 절대복종형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선군전략만을 지향할 경우에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의 불균등 배분으로 인해 인권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3)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

북한 인권의 실태는 심각한 인간생존활동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뒤로하고 떠난 수십만의 탈북자들에 의하여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처음에 국제사회는 북조선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실태가 이성적인 면을 넘어섰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으나 탈북자들이 공개한 공개총살, 정치범 관리소에서 강제노역을 당하는 동영상의 생생한 모습들이 알려지면서 확실히 확인되었다. 결국 국제사회는 “북조선의 인권개선”을 가장 시급한 국제적문제로 다루게 되었다. 그러자 북한 당국은 더 이상 자신들의 야만적인 “반인륜적범죄” 만행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세계 모든 나라에 꼭 같은 인권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을 국제사회의 인권과 가능한 일치하도록 맞춰야 한다. 즉 북한은 나라의 문호를 활짝 열고 인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세계사회의 인권 기준이 2차세계대전시 독일의 대량인권침해사태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권 논의가 개최되어 최초로 결성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1966년의 양대 국제인권규약 및 기타 국제인권조약을 통해 인권 문제는 각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북한 인권의 경우 세계 인권 기준을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족하나마 상당 부분을 법을 제정하며 노력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는 근로권 및 사회보장, 의료 관련 법규들의 경우는 경제난 때문에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인권 관련 법률이 많이 제정되었다. 또한, 북한은 2009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며 더 발전된 국가 건설을 위한 주민 독려를 목표로 많은 부분의 인권 관련법을 개선하며 외부의 고찰과 날카로운 견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권은 사회주의 국가이든, 자본주의 국가이든, 그 어떤 국가의 정치 체제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가져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다. 그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국가는 그 어떤 정치세력이 유린하는 것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짓고 있다. 국제사회가 인간의 권리를 보편화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히틀러와 같은 전범자들의 유대인학살과 같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비인간적인 행위가 더 이상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였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에 의해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대회를 통하여 인간의 기초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는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의견에는 세계 200여개의 나라들 가운데 170여개나라들이 동의하였고, 북한정부도 이 중의 한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북한이 공인한 비엔나 국제인권대회와는 관련이 없는 듯 인권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현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내부에서부터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그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역할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기서 자세히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북한에 압박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변화와 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방법에는 북한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방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거나 남북한 사이의 인권 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어떤 방안이든,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는 대북정책을 중지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 사이에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법률들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과 여러 가지 의견들로 나뉜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과연 남한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맡아야 하는 역할로 올바른지, 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2. 인권의 실태

1)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 실태

북한 인권 문제가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이를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인권의 실태는 악화되고 있다. 그 원인은 수령 독재 체제라는 북한의 정치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이르는 복합적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 정부의 무능함과 더불어 외교문제,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 등의 문제들이 북한 인권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북한 인권 실태의 열악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상황은 두 가지의 다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서구의 시각이 반영된 자유권이다. 두 번째는 기본적 필요 등 생존권을 고려한 사회권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을 비판하는 것이다. 두 시각의 대립이 과도하면 북한 인권 증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는 민감한 사안이다. 여기서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알아보았다.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 실태는 크게 생명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으로 나눠서 바라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생명권 침해는 인간의 존엄성, 가치와 맥을 같이 한다. 생명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권리 역시 생명을 전제로 생겨난다. 생명은 경중을 따질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함부로 침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현재 의식주와 직결된 문제들이 심각하다. 또 식량난, 전력난, 외화난의 3대 경제난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여 그들의 생명권을 침해한다. 생명권 유린의 또 다른 대표적 예는 공개처형이다. 공개처형은 보통 총살형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실시되는데, 북한에서 사형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009년 형법을 개정하여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 고의적중살인죄까지 사형 규정의 범위를 넓히면서 주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보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생명권 침해도 극심한데, 22호 관리소에서 1987년부터 1980년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따르면 주 1회로 매우 빈번하게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살아 있는 수감자들 역시 공개 처형 장면을 목격하도록 강요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북한에서는 평등권 침해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 제정은 지속되고 있고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상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여성이 법적으로 평등을 보장받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부계중심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다.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경제활동에서의 역할 분배 또한 불공평하다. 성별분리정책에 의해 남성들은 높은 임금과 각종 연금이 보장되는 중

공업, 전문직 분야에서 일하는 반면 여성들은 경공업 등 낮은 임금과 연금이 보장되지 않는 분야에 배치된다. 그러나 여성의 인권이 남성에 비해 지켜지지 않는 것과 달리 북한의 경제 활동은 여성에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북한은 여성을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한 축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실상은 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는 않으면서 인구 절반의 경제 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책략이다.

다음으로 자유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으로 국민이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유는 타인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행위이고, 법적으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북한정보센터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따르면 북한 인권침해 사례 11206건 중 자유권 침해는 6616건으로 59%를 차지하며 이것은 북한에서의 자유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북한은 주민의 거주와 이동, 여행의 자유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신체의 자유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 자유권 규약(제7조, 9조, 10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고도 비인도적인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북한 사회주의헌법에서도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구금시설들은 수감자들을 강압하고 고문하며 심지어 강제 노예로 만든다. 또한,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다. 그 이유는 북한이 종교를 해방 후 봉건 시대의 낡은 유물로 인식하며, 종교가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혁명의 의욕을 없앤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현재 약 4만~6만 명의 북한 주민이 신앙 때문에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소지하였다는 죄목으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회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건의 형성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은 사회권을 통해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것은 생존권적 기본권과 같은 개념이다. 북한의 사회권을 근로권, 교육권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내세웠던 사회보장권과 근로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고 북한 주민들 역시 직장에서 시장, 부업으로의 근무권 이동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은 비효율적인 직업배분을 야기하고 있으며 공장에서의 유희인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조부제, 과도한 노동 시간, 무리 배치 등도 북한의 근로권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교육권 면에서 아동들은 법에 명시되어있는 ‘아동의 보호 및 지원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교육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고 북한 체제의 정치적 신념과 사상을 일체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동들은 교육 선택권의 제약, 과도한 노동 수행, 출신 성분에 따른 선별적 진학, 비정상적인 무상교육 등으로 인해 교육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탈북자들의 인권 실태

최근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북송되면서 탈북민들의 인권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탈북자들은 여전히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탈북민들을 체제대결의 입장에서 바라보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자 간첩 등의 루머가 퍼지며 사회적으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탈북자들은 한국 입국 과정에서 정착지원금에 대한 착취, 인신매매,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 납치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며 이들은 일상적으로 감시되어 잠재적인 범죄자 대우를 받는다. 정착했다 하더라도 취업 고용 문제, 낮은 소득 수준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북한에서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이들도 많다. 이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20%나 낮은 고용률을 보이며, 고용된 사람마저도 단순 노무, 기계조작, 일반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탈북자들의 인권 실태는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매우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5월 27일, 라오스에 억류되어 있던 탈북 청소년 9명이 중국을 거쳐 북송되었다. 이전에는 라오스까지 온 탈북자들에게 별다른 제지가 가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은 북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북송까지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북한에게 반인륜적인 행위라 비판하였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한국 대사관도 못매를 맞았다. 이들 탈북자들이 북송되었을 때 받을 강압적이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인 대우와 인권 침해를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은 한국으로 향하다 붙잡혔다는 점,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으로 인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탈북을 단속하는 현 북한의 상황으로 인해 처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탈북민들이 도중에 북송되어 처형당하거나 강제수용소에 수감되어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비단 라오스 탈북 청소년 북송 사건뿐 아니라 미얀마에서도 탈북자들의 인권이 극심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많다. 탈북자 64명이 현재 미얀마 반군에 억류되어 강제노동과 성매매에 동원되고 있으며 이들의 억류 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최장 9년에 이른다고 한다. 탈북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고된 노동과 질병으로 인해 현지에서 사망한 탈북자들도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이 미얀마에 억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에도 탈북자 80명이 억류되어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돈을 지불하고 이들을 석방시켜 데려온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인권 실태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었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여러 측면에서의 인권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유를 갈망하여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한 탈북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의 가혹

성이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식되어야 하고, 북송을 막고 탈북자들의 탈북 후의 생활과 인권을 위해 지원 시스템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제부터 그 방안들 중 하나로 제시되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3.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과 제정 방향

1) 북한인권법

북한의 인권 유린은 이처럼 오래 전부터 국제적으로 논쟁이 된 점이고 현재에도 논쟁이 끊이지 않지만 여전히 큰 문제이다. 통일연구원 저서인 ‘북한인권백서 2013’에 의하면 정치범 수용소의 수는 줄었지만 인권 유린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송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의 문제가 또다시 세간에 떠올랐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북한인권법은 공통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도모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법안이다. 미국과 일본이 몇 해 전에 제정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제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08년 재 발의되어 법안이 계류된 상태이다. 2011년에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 두 가지의 법안이 주장되면서 한차례 논쟁을 빚다가 2013년 민생의 개념을 배제한 북한인권법이 발의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한참 전에 제정한 반면 북한의 인권에 가장 개입해야 마땅한 대한민국이 정작 현재까지도 제정을 하지 못해 국내에서나 국제사회에서나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여전히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도 적지 않으나, 제정에 대한 논쟁보다는 그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들과 우리나라가 발의한 법의 명칭은 같으나 그 내용은 다른 면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점을 알아보기 전에 두 국가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미국은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는데, 현재 두 번의 연장을 통해 2017년까지 법안이 유효하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과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그리고 탈북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더라도 미국으로의 망명이나 난민 신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망명 허락이라는 점에서 탈북자의 인권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법안에는 탈북자 망명 허락이라는 항목은 없고 탈북자의 인권보다는 북한지역 내의 주민들의 인권을 중시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법안들 중 첫 번째는 북한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 확대에 관한 법이다. 법안의 초반부에는 북한주민들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접하도록 2개의 미국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마다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해 규정되는 예산인 2400만 달러의 일부분을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의 대북 라디오 방송에 투자하여 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등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지원의 연계에 관련된 법안이다. 그 중 교도소 및 강제수용소에 관한 내용은 북한이 그런 곳들을 자국의 사법제도의 일부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할 우려가 있는 법도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탈북자 양산 가능성에 대한 법이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난민 캠프 설치에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지원하거나 유도하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법안이 탈북자의 미국 입국을 촉진하면서 이들의 한국 국적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점은 한국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대목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미국의 리치 의원은 법안의 하원통과 직후 이 법에 숨은 뜻은 없으며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인권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강조한 바가 있는 반면, 북한 자유법안과 인권법안의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허드슨연구소의 호로위츠 연구원은 "인권을 통해 북한을 소련처럼 붕괴시켜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순수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2006년에 제정하였는데, 정식 명칭은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로 1년마다 한 번씩 일본 정부가 국회에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또는 납치 일본인들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제기구와의 연계 강화이다. 세 번째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과 국제적 연계의 강화이고 네 번째는 탈북자 보호 및 지원이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탈북자 보호 및 지원이라는 조항은 있으나 탈북자를 지원할 구체적 방법은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본 내 탈북자들에게는 지원을 하도록 제정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의 선박 입항 금지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조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납치된 일본인을 되돌아오게 하는 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간접적이고 국제 사회에서 일본에게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일본의 북한인권법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나.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 설치,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설치, 북한 인권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과는 다르게 북한 지역 내의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성향을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나 법의 실효성이나 인권의 실질적 개선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는 만큼 논쟁이 되는 내용을 철저히 수정하고 보완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2) 북한인권법 제정의 찬성과 반대

북한인권법은 여전히 찬성과 반대의견의 대립이 심각하다. 북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며 인권이 개선되어야 하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하나 북한인권법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먼저 북한인권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과 그에 대한 근거를 알아보았다.

가. 찬성의견

첫 번째로 북한의 인권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말한다. 북한인권법의 법 이론적 근거 인도적 개입입법(Humanitarian Intervention Law)이다. 이것은 가혹한 인권 유린의 참상을 막기 위해 내정간섭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라는 인류의 요청을 말하는데, 북한의 극악한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정의에 입각한 간섭은 인도적 개입입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주민들은 남한의 주민들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권 개선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주체이며, 그런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과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정이 더욱 더 시급하다는 이야기이다.

둘째로, 북한인권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근거로 주장하는데, 국회에 발의된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보면 이렇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북한인권 관련 사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의약품 제공 등 인도적 지원은 그 지원이 필요한 북한주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입법 목적은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으로서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 주민은 자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어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점이라고 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적극적인 개선 활동을 펼치면 국제사회와의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나. 반대의견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내정간섭하고 북한을 억압하는 법이며 자극을 하여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뒤에서 다룰 북한인권법의 조항 중 하나인 민간단체 지원책이 전단살포단체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북한이 내정 간섭이라고 인식할 것이라는 대표적인 사항이다. 북한측이 체제 위협을 의식해 오히려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어 결국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두 번째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탈북자 난민을 허용하는 조항이 북한인권법안에 포함되어있지만 미국이 한 해 동안 수만 명의 난민을 받는데 비해 탈북자 난민 허용은 연 평균 20명 정도에 그친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 예산의 실질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앞서 다뤘던 미국의 북한인권법에는 2400만 달러를 북한 인권 개선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의 예산 집행을 살펴보도록 한다. 200만 달러는 자유아시아방송 등의 대북라디오 방송을 지원하는데 배당된다. 그러나 이 방송사들에 대한 지원은 법안 제정 이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안으로서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머지인 탈북자를 지원하는 데 배당되는 2000만 달러와, 북한주민지원으로 책정된 200만 달러의 예산이 배당되는데 그치고 예산 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세 번째는 북한인권법이 전단살포단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략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단살포단체는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외부의 소식을 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단의 일부에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이 도발을 한다고 여긴다. 북한인권법의 조항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북한인권재단 설치의 여부이다. 북한인권재단의 주목적은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것인데, 민간단체들 중 일부 전단살포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서 결국 인권 개선 여부 이전에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북한인권재단의 경우에도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7월에도 임진각 근처에서 전단을 살포하려 했으나 북한 당국이 임진각을 통째로 날려버리겠다는 발언을 하여 임진각 근처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은 이들 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아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단살포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뉴욕 인권재단 등 일부의 단체들이지만 지원을 했을 때의 위험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과 필요성에 대한 결론

첫째로, 북한인권법이 내정 간섭이라는 의견에는 많은 반박이 따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들은 인권 개선 개입의 정당성을 근거로 하여 ‘내정 간섭’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데, 제정할 경우 남북한의 관계에서의 변화나 북한 내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제정으로 인해 남북한의 관계가 조금은 악화될 수 있으나, 예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과 일본과 북한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법으로 제정한 이상 인권 침해가 더 심각한 상태로 몰아간다면 법을 근거로 하여 국제사회의 엄청난 지적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북한인권법은 인권 침해 악화 가능성보다는 개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남북한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반대의견에서 두 번째의 의견인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제정 시기 대한 실효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총 허용한 탈북자 난민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59명으로 집계되었다. 미 국무부는 탈북 난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제3국에서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미국에 들어오는 탈북자 수에 비하면 적지만, 탈북자 난민 허용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난민 허용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실효성이 크지는 않지만 분명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북한인권법에서 각 조항마다 실효성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개선을 도울 조항들만 남기는 과정이 분명 필요하다.

한편, 세 번째 주장인 전단살포단체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큰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논란이 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할 경우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위협을 감수하고도 인권재단 설치 시의 실효성이 크지 아닌지는 뒤에서 제대로 다루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논쟁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연구했는데,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해서 북한인권법에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인권법의 조항들 중 실제로 정말 필요한 사항도 있으나 실효성이 의심되거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항들도 있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 필요한 것에는 동의하나, 현재 우리나라가 진정 필요로 하는 법이 여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단정 지을 수 없으며, 그것에 대해서는 쟁점 사항에 대한 연구를 마친 후에 결론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3) 쟁점 사항

북한인권법에 대한 제정이 재추진되는 상황이지만 법안의 항목들 중 논란이 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 그 항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논쟁이 심한 세 가지를 선정하여 연구하기로 했다. 첫째로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 두 가지 법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법안에 민생 개념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는 양측이 동의하는 가운데 제정을 늦추는 원인이 되는 의견 대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둘째는 독일이 분단되어있을 때 설치했던 인권기록보존소와 같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 유무이다. 실효성의 면에서는 기대를 크게 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인권 침해에 개입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위험성 또한 무시할 수 없어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것은 북한인권재단의 설치 여부인데, 이것을 설치할 경우 민간단체를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북한인권법 제정 자체를 논의할 때 실효성과 북한 간섭이라는 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가. 민생 개념의 포함 유무 -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

(1) 문제 원인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이후 2011년에는 북한인권법이 아닌 북한민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생겼고, 현재까지도 두 가지 법안 사이에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인권법은 민생 개념을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고, 북한민생인권법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안 내용도 인도적 지원 등 민생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둔 법에 민생의 개념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가 현재까지 두 법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두 법의 기본적 내용은 비슷하지만, 인도적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나 남한 내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북한인권법은 인권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인권 증진과 기본적 생존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가짐을 확인하고,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책무 이행을 위한 우선적 재원 확보를 하여야 함(안 제3조).

- ▷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 ▷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인권 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 ▷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활동에 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함(안 제9조).
- ▷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의 기관을 거쳐 북한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이것은 가장 최근인 2013년 4월 17일에 접수된 북한인권법으로 현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법안에는 북한인권재단의 설치에 제외되어있지만 논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법의 제정을 우선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인권재단의 설치도 포함해서 생각하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의 법안을 살펴보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대부분의 법안에 민생의 개념은 거의 배제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북한민생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 ▷ 통일부 장관은 매년 정기국회에 북한 인권증진과 인도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안 제4조).
- ▷ 국군포로·납북자의 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간의 인도주의 업무 촉진계획 수립,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호 및 생활유지를 위한 식량, 비료, 의약품 등 각종 물품지원, 북한주민들의 생활유지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계류, 의료기기 등 각종 기자재 제공과 이에 관한 교육 지원 등의 업무 등을 집행하기 위해 통일부 내에 담당 기구를 설치(안 제5조).
- ▷ 통일부에 북한주민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인도주의자문위원회 설치(안 제6조).
- ▷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에 관한 사항과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증진 및 생활지원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보존·발간 등을 담당하기 위해 통일부 내 인도주의정보센터 설치(안 제7조).
- ▷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 등과 관련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증진 노력(안 제8조).
- ▷ 평화통일을 촉진하고 동포애 확산을 위한 국민 교육과 홍보(안 제9조).
- ▷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집행(안 제10조).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의 공통점은 북한 지역 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제한적이라는 점과 탈북자 인권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민생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만 알아보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북한인권재단의 조항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 내의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있다. 이와 다르게 북한민생인권법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의 협력을 통해 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인도적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북한인권재단의 조항도 제외되어있다. 두 법안을 둘러싼 또 다른 논쟁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할 경우 북한 내 감시가 필요한데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으며 북한인권법이 제정된다고 하여도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에 미치지 못하고 남한 내 민간단체들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그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두 법안에 대해 논의해야할 사항은 많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민생의 개념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분석해보았다.

(2) 민생 배제 필요성

북한민생인권법에서는 인권을 생존권에 치중해서 본다고 할 수 있는데, 인권 개선이라고 할 때의 인권은 자유권 또는 사회권과 그 외의 여러 인권을 포괄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 인권 개선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다. 한편으로는 통일부가 인도주의자문위원회 및 인도주의정보센터 설치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자유권과 같은 북한 내의 다른 인권에 깊게 개입하지 않는 지원과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은 생존권 향상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북한민생인권법의 조항들도 다른 문제점이 있음에도 실효성이 있는 것들이 많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북한이 체제 위협을 인식할 수도 있는 반면, 북한민생인권법의 경우 북한의 반발을 막고 남북관계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 개념을 포함했을 경우 법의 원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반박이다. 북한민생인권법과 같은 경우는 인권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에 민생의 개념을 포함시킬 경우 주요목표가 분산되어 인권 개선에 주력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생 개념은 배제하고 인권만을 중심으로 하는 법이 실효성이 클 것이다.

(3) 제정 방향

민생 개선도 인권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이지만, 민생 개선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정책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각 조항별로 따지면 북한민생인권법에서 북한인권법이

필요로 하는 조항들이 있을 수 있으며, 현 상태의 북한인권법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생까지 목표로 두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민생 개선만을 다른 다른 법안이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인권과 민생 두 측면 모두 실효성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민생 개념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북한인권법이 완전히 인권 개선을 위한 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북한민생인권법에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것처럼 북한인권법의 투명성 확보 항목의 실효성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단순히 민생 개념의 포함 유무만을 따져서 북한민생인권법은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올바른 북한인권법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민생인권법과 비교해서 필요한 조항을 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1) 문제 원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북한인권법의 핵심 중 하나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내의 인권침해행위를 모두 수집, 기록, 보존하여 통일 후 인권이 유린당한 자들에게 보상의 혜택을 주거나 인권침해자들에게 처벌을 주는 근거로 쓰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현재는 이러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해 이것을 국가기관에 둘지 아니면 민간기구에 둘지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쟁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의 논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원적인 문제인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설치를 통해 북한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체제에 대한 과거청산을 남한 국가기구가 담당하여 통일 후 남북 사회 통합을 그 의도로 한다 하여도, 이것은 평화통일이 아닌 북한붕괴로 인한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야기하고, 통일 후에도 북한 체제에 대한 단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남한이 설치를 하면 북한도 따라서 남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 수도 있어 결국 이 기구가 인권의 정치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의견도 있다.

(2) 필요성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면, 설치로 인한 위험성보다 인권 개선에 대한 실효성이 크다는 근거를 낼 수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 침해를 기록하거나 감시하는 방법 없이 인권 침해에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은 마땅히

없으며, 지금까지도 북한의 인권의 실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게 지적을 가하더라도 북한은 인권 침해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막고 예방할 수 있으며, 이것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항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3년에 설립되어 10년 가까이 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을 먼저 해오던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도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였다고 해서 당장 인권침해를 완화시키기에는 북한의 인권침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정권 차원에서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렵다. 그러나 꾸준한 기록과 축적을 통해 북한 정권을 간접적으로 견제하고 압박을 가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도 부담을 느끼고 인권에 대한 법을 수정하거나 침해를 누그러뜨리는 등 인권 개선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3) 제정 방향

법안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만 명시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자세히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을 유심히 봐야 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일회적인 기구가 아니라 통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할 기구이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세하고 꾸준한 검토를 거친 뒤에 설치되어야 한다.

인권기록보존소를 최초로 설치한 나라는 독일인데, 우리나라에게 맞는 제정 방향을 알기 위해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961년 독일이 분단된 상황에서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세워 동서간의 자유로운 교통을 차단했다. 이에 서독은 장벽 건설 및 동독 내의 정치적 폭력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동독의 비인도적 범죄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처벌에 대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가 잘츠기터 소재 주법무성의 중앙기록보존소이다. 이 기구의 설치에는 동독정권의 폭력행위인 불법적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대가를 향후에 치르게 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고 이를 통해 폭력행위를 조금이나마 억제하려 했다. 이 기구의 임무의 범위를 알아보면, 설립 초기에는 베를린 장벽과 내독 국경선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가 주를 이룬 인권침해행위의 수집과 기록에 그쳐있었다. 중앙기록보존소는 폭력행위를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정치적 이유에서의 불법 판결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정확히 규정하였지만, 마지막 유형인 종족살해, 납치에 대한 행위는 실제로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기록 범위가 여기까지 국한되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비록 독일의 중앙기록보존소의 기록 범위가 제한되었지만, 동독 정권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확신할 수 없어도 그 실효성은 인정받고 있다. 동독정권의 인권침해행위를 지속적으로 기

록하고 축적함으로써 동독의 인권문제가 단순히 이념 및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핵심부의 의도성과 조직적 인권침해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퍼뜨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로써 동독정권의 인권정책이 수정될 수 있었다.

독일은 우리나라나 북한과는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다른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독일은 전쟁도 겪지 않았으며, 동독이 서독의 위성도시 정도로 인식되었지만, 독일의 중앙기록보존소의 실효성이 입증된 시점에서 그 사례를 통해 남북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독일의 경우에는 기록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명시하였다. 베를린 장벽과 대독국경선이라는 공간과 네 가지 유형의 폭력행위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권 침해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라고 하면 북한이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만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를 고려해볼 때 북한 지역 내와 남북한 국경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만을 제한적으로 기록하여서는 안 된다. 북한 지역 밖에서 다른 나라의 정부 또는 다른 국적을 가진 개인에 상관없이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했을 경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인권침해행위를 기록할 경우, 그 나라의 부정적 반응이 당연히 뒤따를 테지만, 인권 침해의 주체를 북한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북한 주민 또는 탈북자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조직과 그 명단을 기록할 필요성도 있다. 인권기록보존소의 기록을 향후 처벌의 근거로 사용하려 한다면 행위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넓은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독일의 사례에서 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중앙기록보존소가 내독관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동독 정권의 집요한 폐지 요구에도 계속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기반이다. 이에 대해서는 서독사회의 인권중시 문화 및 자유민주적 가치 기반의 정착과 동시에 인권침해 기록업무의 제도화 덕분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것은 서독 정부는 정치적 폭행과 같은 동독 내의 인권침해 기록을 위한 명확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해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결국 정치적 논리에 상관없이 활동이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기록을 위한 제도적 틀을 완벽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인 논리나 이념의 개입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북 압박의 정치적 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접근을 경계해야 하며, 민감한 북한인권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험을 최대한 피하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 북한인권재단 설치 - 민간단체 지원

(1) 문제 원인

북한인권재단은 정부가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며 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및 운영과 인권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남부접촉 및 교류협력과 국제적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러한 북한인권재단 설치의 여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은 일부 대북전단살포단체에게도 정부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다. 전단을 살포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며 결국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민간단체들이 북한인권재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주목적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등 순수성을 잃거나 독립성을 훼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인권재단의 실효성도 논의되는데, 현재의 독립된 민간단체들을 재단이 하나로 묶어서 실질적인 인권 개선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2) 필요성

북한인권재단 설치의 필요성을 가장 고려하게 되는 부분은 민간단체들의 재정적인 문제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탈북단체들은 NED, HRDF(인권과 민주주의 기금)의 자금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란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원조기금으로서, 파라과이·니카라과 등에 반공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미국 해외홍보처(USIA)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미국은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서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NED의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14개의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144만 달러(16억 4,232만원 정도)를 지원 받았다. 그러나 이 단체들에 대한 NED의 지원금이 2012년에는 140만 달러에 달하였으나 2013년에는 20만 달러로 대폭 줄어들어 재정난이 심각해졌다. 그러므로 민간단체들의 운영을 위해 NED처럼 지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단살포단체가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북한 자극 위험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재정난에 부딪혀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들마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이로 인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최근 임진각 사태 등 전단살포단체들의 전단살포 행위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지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논란 없이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현재는 소규모 단체들이 많고 단체들 간의 협력과 활동연계가 저조하며, 남한 내 북한인권 및 민주화운동단체들과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의 문제에 반박하여 북한인권재단의 설치로 이 단체들의 활동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3) 제정 방향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설치 그 자체보다는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보
완책과 단체들 간의 협력 증대를 위한 활동들이다.

첫째로, 북한인권재단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정부와도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다
는 것인데 민간단체들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고서 유지시키는 방향을 생각해보
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북한인권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을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보다는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
NPO)로 밝히고 있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만 명칭을 시작으로 운동 활동들을 다른 목적
이 아닌 북한인권운동이라는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재단의 목적이 민간단체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만 아니라 북한인권운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현재까지 민간단체들이 서
로 연대를 이루어 협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단체들 간의 정책 협의나 공동사업 추진 등
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소규모의 단체들이 난무하는 상황이지만 보다 확장
된 규모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들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한 내 단체들만
을 위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다른 국가의 북한인권 관련단체들과도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
도록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그동안 북한인권운동은 다수의 작은 단체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체계
적이지도 전략적이지도 못했다. 북한인권재단은 협력의 강화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확장시키
고 또한 단체들을 광범위하게 조직화하며 제도적 완비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많은 측면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의 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치에 대한 제정 방향은 아니지만,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설치는 제외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해두려 한다. 2013년 3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
권법에는 북한인권재단의 설치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더라도, 북
한인권재단이 법안의 여러 조항들 중 가장 논란이 되기 때문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우선시하
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 조항을 초기에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포함하든 하지 않든 단순히 설치의 유무만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방안에 대해서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1. 북한인권법의 제정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며, 국제사회의 역할 그리고 남한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다. 그리고 인권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북한인권법이다. 논문을 진행하면서 북한인권법은 과연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늘 의문점을 가졌다. 북한인권법의 조항들 중에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자체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본론 첫 부분에서 인권의 기준에 대해 분석하면서 북한은 인권을 정권 안보의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하였다. 법 제정과 같은 대북정책이 북한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북한이 체제의 위협을 인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한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으로는 북한 내의 인권 실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북한과의 관계의 악화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어 보인다. 설령 남한과의 관계가 다소 악화된다 해도 법 제정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북한의 반응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 개선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북한인권법이 인권 개선에 효과를 가진다면, 제정에 대해서 고민해볼 이유가 충분히 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면서 인권법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도 인권에 대한 기대 수준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식이 고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을 묶어서 하나의 법으로 제정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북한인권법’이라는 명칭을 걸고 그 목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2. 북한인권법 제정 방향

민생의 개념을 제외하자고 하면서 북한민생인권법의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은, 북한인권법이 가진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위협성을 띠기 때문에 위협성이 비교적 적은 북한민생인권법의 조항들과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등은 독일의 사례에서도 실효성이 입증되었고, 북한에게 인권을 개선시키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그 압력의 정도는 크지 않아야 하고, 북한

인권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창피주기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보완과 수정을 통해서 최대한 결함이 적은 방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를 고려해볼 때 북한 지역 내와 남북한 국경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만을 제한적으로 기록하는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 대신 북한 지역 밖에서 다른 나라의 정부 또는 다른 국적을 가진 개인에 상관없이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했을 경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기록해야 한다. 또한, 인권기록보존소가 정치적 논리나 이념의 개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권 정책이 변화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인권기록보존소를 단순히 대북 압박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접근을 경계해야 하며, 민감한 북한인권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험을 최대한 피하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은 가장 논쟁이 심한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민간단체들이 지원을 받음으로써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잊지 않도록 비영리기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며, 더욱 실질적인 인권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들 간의 협력과 소통이 증가되어야 하고 국제적으로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보완책이다. 연구를 마친 결과,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은 민간단체 지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단의 설립이 북한인권법의 특성상 가지는 위험성을 똑같이 가진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면 설립 자체는 부정해야 할 수도 있다. 즉,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설립 유무에 집착한다고 할 수는 없고, 민간단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싶다. 단순히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과 인권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무척 다르다. 재단을 설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북한에게 압력을 가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중요한 것은 북한인권재단의 설치보다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다.

3. 연구 의의

북한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낯익은 분야 중 하나가 인권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권 침해의 실태만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몇 가지 사례밖에 알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인권 실태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심각하다. 21세기의 국가라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방관하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정치나 외교, 교육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그만큼 인권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권의 실태는 언제나 심각했지만, 인권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가 엄청 많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으로서는 북송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논문을 쓰기 전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 알게 되

고, 사진 전시회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권 개선을 위한 작은 노력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의 연장선이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이 연구가 고등학생의 것이지만 보통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과는 다르게 접근했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법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반면, 여기서는 법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 인권 실태와 그 전에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의 기준을 분석했다. 북한이 인권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그 배경과 원인을 연구하면서 북한의 인권이 심각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바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인권법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기존의 시각들과 보완 방향을 활용하여 현재의 북한인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북한인권법이 진정 인권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당별로 의견을 단일화하는 것을 피하고 정당간의 의견 대립을 조율함으로써 정당의 싸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결국 북한의 인권문제가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장되어서도 안 되고, 법안의 각 조항들은 꾸준하고 철저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근본적인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이 논문을 완성하면서 북한의 인권과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전문가가 작성한 논문이 아닐지라도, 이 논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북한과 북한 내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알아가고 더 나아가 이 논문에서도 남겨놓았던 쟁점 사항들과 의문점들과 현재의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해 의심을 품고 여전히 논쟁에 둘러싸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는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통일연구원(2009) 『북한인권 침해 구조 및 개선전략』
2. 하영선-조동호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3. 서보혁 『코리아 인권-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4. 허만호 『인민의 천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5. 한국청년유권자연맹-국회의원 원희룡 『북한인권법, 유권자의 선택은 :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
6. 김수암(KNU 연구진) 『북한인권법 제정,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7. 이건목 『동독주민과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에 대한 정치적 갈등사례 비교와 시사점』
8.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역할 - 독일 사례 비교 검토』
9.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KNU 연구진)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10. 조정현, 김수암, 손기웅, 이규창, 이금순, 임순희, 한동호(KNU 연구진) 『북한인권백서 2013』
11.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인권 관련 측면에서 바라본 분단국가에 대한 다른 시점

이규희 (대원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북한이라는 나라는 가깝지만 먼 나라이다. 대한민국과 분명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경에 의해 성장한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되어버렸기에 현 상황과 같은 안타까운 분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분단을 예방하고 막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분단을 끝내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화합으로 이겨내어 남북한이 “분단을 뒤로한 통일 국가”가 아닌 “통일 후 분단 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한 국가”라는 헤드라인으로 전 세계의 한민족이 ‘한 민족’으로 불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북조선은 이제 세계에서 마지막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남한과 북한 국민들 그리고 인민들은 서로를 잘 모른다. 이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철하고 견고하다. 외국인들 중 대다수는 남한과 북한을 잘 모르며,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면 북한인지 남한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대한민국과 북조선은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것이 어떤 면으로는 부끄럽고 당혹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 청소년의 대부분은 통일을 반대한다. 통일이 되어서 북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클뿐더러, 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꺼려지고, 서로에 대한 선입견이 극심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들어서 덧나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통일은 우리 모두가 찬성하는 의견이 아니다. 그런데 왜, 통일을 주장하고 통일을 원하는 것일까? 통일을 원하고 찬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왜 통일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있을까?

북한의 인권 실태는 배우지 않아도 알듯이 매우 심각하다. 도덕적인 정부와는 거리가 먼 북한의 정부를 비롯해 공개처형과 고문의 정도를 지나친 야만적인 행위 등 북한의 모든 것이 시민들을 압박하고 인권을 무시한다. 논문에서도 계속 언급된 것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세계 인권 선언을 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수록되어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인간답게 살 권리란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이런 권리를 하늘이 내린 권리라는 뜻인 ‘천부인권’이라고 한다. 인권은 재산, 성별,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에

게 적용된다.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인권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북한 국민들에게는 무엇이 그들을 위한 것일까? 도대체 북한 사회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 것인가? 말할 자유,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자유, 자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 등 개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사회의 일원이라는 명목 하에 어긋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그들의 삶을 침해하고 자유를 막는 북한의 현실을 우리 모두 잘 안다고 생각한다. 통일의 이유는 남한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다양한 세력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아마 통일 이후 남한의 경제가 살지 못하고 북한을 도와야하는 상황이 오면 남한의 경제 성장과는 다르게 저하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다. 자신이 처음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난 후 가장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형제자매이다. 형제자매는 나 자신이 사회의 한 사람, 개인으로 서기 전에 먼저 핏줄을 함께하고 삶의 대부분을 공유하며 서로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형제자매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나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고 나의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눈감고 도와주지 않을 것인가?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이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그들 또한 우리의 정성어린 도움을 언젠가는 깨닫고 인정할 날이 올 것이다. 한 핏줄로 이어진 두 나라 사이에서 이보다 더 진실된 마음이 어디 있겠는가? 내 형제, 내 자매가 사회로 인한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며, 인간 취급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과 같은 기분일 것이다. 북한은 남한에게 그러한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 더 이상 곁에서 못 본 것처럼 행동할 수 없고 그것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행위이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분단국가이거나 한 뿌리를 공유한 국가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와 국제적인 동맹을 통해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니 한 민족인 우리는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숙해져야 한다. 한민족의 한 민족다운 면모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에 급급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각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는 많은 비정부기구단체들 또한 배워야 한다.

이제는 결코 문화로만, 언어로만 국가를 알리는 노력보다는 북한과 통합해 하루 빨리 인권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아량과 넓은 포용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시급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에게 우리나라의 진정한 한민족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고 도와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을 돕고, 더 발전되어서 그들을 비난하고 색안경을 낀 상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배려와 나눔, 그리고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더 발전된 사회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북한 국민들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들도 없는 형제자매

이다. 한 뿌리에서 기원된 두 나라는 ‘통합’되는 것이 아닌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북한 인권법 제정과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가족을 두고 부정적인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원치 않듯이 북한에 관한 인권법을 빨리 통과시켜 북한과의 거리를 좁히고 모두가 웃으며 어깨동무 하는 날이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서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사실이라면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비록 발전된 사회를 가지고 있더라도 국민의 인식 수준을 향상시켜서 자만하기보다는 먼저 돕는 몇몇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동방예의지국, 한민족 등 이러한 칭호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모두 우리 선조들께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이겨내신 덕분에 100년만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우리의 미래가 북한과 함께한다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힘들고 시든 인권 파괴를 겪는 북한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동 발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려면 나 자신부터 통일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 북한을 호의적인 자세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야 한다. 인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그들에게서 삶의 터전과 이유를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형제자매인 그들을 위해 먼저 손을 뻗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토론2>

남한의 북한 인권 실태 관심도를 통해 알아본 한민족의식

이승희 (대원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 논문 내용에 대한 이해, 쟁점들에 관한 논의 *

논문에서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인권이 어떻게 침해당하고 있는지, 북한 인권법을 왜 제정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제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우선 북한의 인권법은 다른 나라들의 보편적인 인권법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두었다. 북한의 인권법이 색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규정해 주어야 했으며, 북한 인권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할 때에도 북한이 특정한 조항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보아야 했다. 결국 북한의 주민들과 북한 자국 사정에 대한 외국의 개입임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북의 의견과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북한 인권법의 제정방향을 결정하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의 인권실태와 인권법 제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려면 북한이 정의하는 인권이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북한의 인권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논문에서는 자유권과 사회권 측면으로 나누어 북한의 인권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유권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인권은 보편적인 인권과 다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서구의 시각이 반영된 자유권 측면으로 북한을 바라보게 되면 위험이 따른다.

위와 같이 북한 인권에 대한 올바른 기본인식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의 인권유린 사례를 접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적인 이야기부터 듣게 되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잔인한 고문, 수감자들의 정체성과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마저 앗아가는 수용소, 생명을 앗보고 쉽게 여기는 공개처형 등 영화나 소설에서나 볼 법한, 아니 오랜 역사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한민족인 북한 주민들에게 행해지고 있다. 여성들이 겪는 평등권 침해, 근래에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 유린까지 북한의 인권 실태는 최악이며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은 인권 침해 사례들도 많을 것이다.

한민족인 남한에서도 제정되지 않은 북한 인권법이 미국과 일본에서는 제정되었다. 국

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계속 대립하며 현재까지도 제정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서도 앞서 언급했던 북한인권의 반보편성을 고려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위의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함은 틀림없다. 다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등의 민감한 부분은 제정방향에서 반영해야 하는 사안이다. 북한민생인권법,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재단 설치, 이 세 가지의 쟁점에서 북한이 이야기하는 인권과 동떨어지지 않고,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조항들을 뽑아 제정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 전체적 생각 및 결론 *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 절반은 자유를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만 절반은 자유를 갈망한다. 절반이 별다른 생각 없이 일상을 살고 있을 때 절반은 억압, 고문, 자유 박탈, 처형 등에 두려움을 느끼며 일상을 산다. 절반이 자신을 인생의 주인공이라 생각할 때 절반은 국가를, 공동체를 인생의 주인공이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남북한의 현실이다. 분단 된지 어언 63년이 지났지만 남북이 통일될 기미를 보이기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감만 확대되고 있다.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사건, 핵무기 발사 위협 등의 작고 굵직한 사건들을 거치며 대부분의 사람들의 북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사상적, 사회문화적 통합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음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실천하려는 의지나 노력은 미비하다. 논문에서 다룬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꿰고 있을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지는 학생이 많을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삶에서 그들을 도울 방법을 항상 강구하는 학생들은 우리나라에 과연 몇이나 될까.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북쪽 땅에서 우리와 같은 생김새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한 때는 한 민족이었던 우리들이 너무나도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이것이 자국의 사정이었다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북한과 남한이 하나라는 것에 적극 동의하지 않는다. 평화통일을 외치지만 실상은 다른 수많은 나라들 중 하나, 그러나 과거의 관계 때문에 얽히고설키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주민들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고문당하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 우리 또래의 학생들이 강제로 공개처형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진심으로 분노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물론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연 자국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북한의 참상을 대하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작은 인권 침해 사례에도 들끓고 일어나며 인권 보호를 주창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같은 태도로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대할지 의문이다. 논문을 쓰면서 북한 인권의 열악한 실정과 북한 주민들이 받는 억압과 생명의 위협에 주목하였지만 우리나라의 한민족 의식 부족에 대한 재고도 빼놓을 수 없었다. 진정으로 남한과 북한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번지르르한 정책보다는 북한의 실정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북한의 주민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으며 그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등 북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